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46호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R&D) 사업공고

2026년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R&D)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4-2. 기타사항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9. 문의처
[별첨] 녹색인증대상 녹색기술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녹색인증 기업의 매출 증대, 성장을 유도하고 녹색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제품 수요 촉진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분야

○ '[별첨]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참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1-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12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예정

○ **(지원기간)** 21개월(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 '26.4.1 ~ '26.12.31

○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당 8.75억원이내 지원(1차년도 3.75억원, 2차년도 5억원)

□ **(지원내용)** 초기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모델을 성장·확대시키는 스케일업 사업화 R&D 지원을 통해 2년간 제품화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기업별 보유 기술·제품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제품화 및 사업화 내용을 구성

구분	주요내용
제품화	○ 기술고도화와 제품화 지원 ○ 녹색 제품 및 서비스 시제품 개발과 실증연구 등 기술의 제품·서비스화 위한 사업화 R&D 지원 - 기술고도화 및 제품화, 수요처 실증 지원
사업화	○ 시장 진출과 양산성능 확보 지원 ○ 개발 제품/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요발굴, PoC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양산지원) 양산성능평가 등 인증, 공정 개선, 공정 컨설팅, 금형도입 등 지원 - (해외진출)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추가 성능개선, 해외 수요처 발굴, PoC 등 지원 * 양산설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공정설계, 인증, 컨설팅은 지원 가능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 : 녹색인증기술 사업화 R&D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관) : 개발 대상 제품/서비스를 현장 적용할 수요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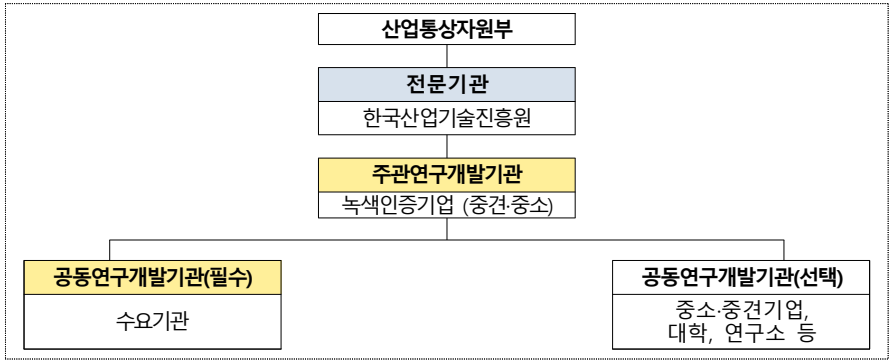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의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산정이 원칙**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가능
-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에 따라 해당할 경우 현금계상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의 제3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함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기술료 등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녹색기술인증 보유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인증기간이 유효한 녹색기술인증 획득 기업
* 접수 마감일(2026.3.27.)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에 한함

②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③ 녹색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녹색기술 인증 신청시 제출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실시권 보유 제외)

④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공동연구개발기관** : **수요기관(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수요기관 : 녹색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 기타 기관 : 대학, 연구소, 기타 영리기관 등

4-2.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과제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요기관 참여

○ 본 사업은 수요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하여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에 따름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6일(목)부터 3월 30일(월) 14: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4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제출 후 신청 내용 및 서류에 대한 최종 수정이 불가함

○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이메일주소로 전달됨(연구개발계획서의 이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①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모든 참여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회원가입 필요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사전 준비사항 처리
⇩	
②온라인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	
③파일 업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go.kr)을 통해 과제정보 입력 및 계획서 제출 (최종 제출 완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만 가능)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순번	부속서류명	필수여부		파일형식	비고
01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과제별 1개	hwp	*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0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과제별 1개	pdf	
03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pdf	
04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5	사업자 등록증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06	녹색인증 확인서	필수	주관기관	pdf	*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 기간이 유효한 녹색인증 확인서
07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필수	주관기관	pdf	
08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최근3개년)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공동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면제 * 2023~2025으로 제출하되, 2025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2~2024로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 후 재무제표 대상년도의 변경은 불가하며, 부적격시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09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주관기관 대표자는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10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 기관별 참여연구원 전원 서명 필요
11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2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필수	주관/공동기관별	pdf	
13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선택	과제별 1개	pdf	
14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과제별 1개	pdf, zip	주관기관 대표 제출 우대가점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제출 ①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②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인증 녹색기술(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첨부)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구매의향서

* **(1번 서류)** hwp 또는 hwpx 파일로 제출 필수 (*pdf 불가*)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mme.or.kr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①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② 발표평가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항목별 평가내용
사업화 역량 (30점)	기술 우수성	15	▪ 기술의 우수성, 내재화 수준 ▪ 경쟁기업의 기술대비 차별성 및 완성도 ▪ 기술개발 목표의 구체성, 정량 정도, 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15	▪ 대표이사, 연구책임자의 사업화 역량 ▪ 과거 사업화 실적 및 운영역량 ▪ 장비, 시설, 인력 전문성 등 자원보유 정도 ▪ 정부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30점)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10	▪ 사업화 목표설정의 체계성 및 현실성 ▪ 사업화개발 목표 및 성과지표의 구체성 ▪ 사업화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10	▪ 기 수행 R&D성과를 활용한 융합 및 타 분야 적용가능성 ▪ 목표기술 및 제품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 신규시장 진입장벽 해소전략 및 실현가능성 ▪ 수요처 확보 가능성 및 판로구축의 다양성 ▪ 마케팅 전략 및 양산 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의지 및 가능성	10	▪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의 구체성 (기업자체 추가투자, 외부 조달 계획 등) ▪ 관련 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수익모델·수익구조의 적정성과 구체성
양산 및 마케팅 계획 (20점)	양산 및 마케팅 자금조달계획	20	▪ 자금조달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자금사용계획 적정성
파급효과 (20점)	기후변화 대응효과	10	▪ 사업화 대상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에 미치는 효과 ▪ 기후·환경문제 해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5	▪ 과제 성공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산업적 파급 효과	5	▪ 해당 산업·기술의 경제적 효과 및 발전 기여도 ▪ 산업 공급망 구축·확보 효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정책방향 부합도
합계 (100점)			

- 우대가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가점사항으로, 최대 5점 부여 가능

①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점 가산
②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2025.3.28.~) '신규' 인증 녹색기술 보유 : 1점 가산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처)의 구매의향서를 제출 : 2점 가산
* 해당 기술명, 품목명(안), 구매예정금액 또는 수량, 대표자 및 책임자의 직인날인 등이 포함된 서류 (별도 양식 없음)

6 근거 법령 및 준용규정

□ 관련 법령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준용 규정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규정확인
- ㅇ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규정·서식**

□ 안내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7 추진 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①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26.2월
↓			
②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 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6.3월
↓			
③ 적합성 검토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KIAT	'26.3월
↓			
④ 과제 선정	**<선정평가>** •(대상) 사전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6.4월
↓			
⑤ 평가결과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6.4~5월
↓			
⑥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내용) 선정 과제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KIAT (검토위원회)	'26.5월
↓			
⑦ 협약	**<1차년도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KIAT→ 주관연구개발기관	'26.5~6월
↓			
⑧ 과제수행	**<1차년도 과제 수행>** •연구개발계획서에 의거한 과제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26.4월 ~12월
↓			
⑨ 보고서 제출	**<1차년도 진도점검보고서 및 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26.11.30.
↓			
⑩ 진도점검 (필요시)	**<진도점검(필요시)>** •1차년도 수행결과 및 2차년도 추진 계획 평가	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7.1월

※ 1차년도 신규과제 기준,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신청자격 검토 - ②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 신청자격 검토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선정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 기관이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에 사후관리 대상조건 1개 이하인 경우 사후관리대상 해제

ㅇ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ㅇ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2. 신청자격 검토 – 그 외

⑧ <삭제>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9 문의처

□ 문의처

운영기간	상담방법	상담 연락처	
공고기간	전화 문의	사업내용	02-6009-3629
		온라인 서류 접수	1877-2041
	이메일 문의	wlalsls1@kiat.or.kr	

*** 운영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문의 폭주로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사전 문의 및 이메일 문의 권고**

별첨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1 신·재생에너지	01 태양광	01 태양전지 및 모듈제조용 소재	T010101
		02 태양전지	T010102
		03 모듈	T010103
		04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 자동화 설비	T010104
		05 태양전지용 BOS (Balance Of system) 주변 기기	T010105
		06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설비	T010106
	02 연료전지	01 건물용 PEMFC (핵심소재)	T010201
		02 건물용 PEMFC (핵심부품)	T010202
		03 건물용 PE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3
		04 건물용 PEMFC (시스템 양산제조기술)	T010204
		05 건물용 PEMFC (연료전지 생산용장비)	T010205
		06 분산발전용 MCFC (핵심소재)	T010206
		07 분산발전용 MCFC (핵심부품기술)	T010207
		08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08
		09 분산발전용 MC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T010209
		10 분산발전용 PAFC(인산염 연료전지)	T010210
		11 건물용 SOFC (구성요소 및 스택)	T010211
		12 건물용 SOFC (관련 BOP)	T010212
		13 SOFC (시스템)	T010213
		14 DMFC 핵심소재	T010214
		15 DMFC 핵심부품	T010215
		16 DMFC 시스템 보조기기(BOP)	T010216
		17 DMFC 시스템 및 시스템양산제조기술	T010217
		18 DMFC 생산용 장비	T010218
	03 풍력	01 풍력발전 시스템 요소부품	T010301
		02 풍력발전 운영/모니터링 시스템	T010302
		03 해상풍력	T010303
		04 풍력발전 시스템	T010304
	04 IGCC(석탄/중질잔유 복합발전)	01 가스화공정	T010401
		02 합성가스정제 및 개질	T010402
		03 합성가스 이용 플랜트	T010403
	05 바이오 매스	01 바이오에탄올	T010501
		02 바이오부탄올	T010502
		03 바이오디젤	T010503
		04 바이오가스	T010504
		05 바이오 합성가스	T010505
		06 동식물성 기름 기반 연료	T010506
	06 해양에너지	01 조력발전	T010601
		02 조류발전	T010602
		03 파력발전	T010603
		04 해수온도차 이용	T010604
	07 태양열	01 태양열 활용 기기 기술	T010701
		02 태양열 소재 및 재료 기술	T010702
		03 중저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 기술	T010703
		04 고온 태양열 활용 시스템 기술	T01070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8 지열	01 지열냉난방 기술	T010801
		02 심부지열 개발 기술	T010802
		03 심부지열 활용 기술	T010803
	09 수소	01 수소 생산	T010901
		02 수소 이송	T010902
		03 수소 저장	T010903
		04 수소 공급 인프라	T010904
02 탄소저감	01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및 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01 연소후 CO_2 포집 플랜트	T020101
		02 연소전 CO_2 포집 플랜트	T020102
		03 연소중 CO_2 포집 플랜트	T020103
		04 CO_2 압축 플랜트	T020104
		05 CO_2 저장 플랜트	T020105
		06 CO_2 수송 플랜트	T020106
		07 CO_2 이용 유용물질 생산플랜트	T020107
	02 Non-CO_2 온실가스 처리	01 환경기초시설 발생 메탄 이용/저감 기술	T020201
		02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T020202
		03 불화가스 저감	T020203
		04 N_2O 저감	T020204
	03 원자력	01 원자력 노심, 재료 및 핵연료	T020301
		02 원전 계통 및 안전	T020302
		03 원전 제어 계측 기술	T020303
		04 원전성능향상	T020304
		05 원전핵주기 및 방사선환경감시	T020305
		06 신형원자로 기술	T020306
	04 에너지저장	01 니켈-금속수소 전지	T020401
		02 리튬이온 전지	T020402
		03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T020403
		04 나트륨-황(NaS)전지	T020404
		05 레독스플로우(RedoxFlow) 전지	T020405
		06 초고용량 커패시터	T020406
		07 리튬이온 커패시터	T020407
		08 BOS(Balance of System) 기술	T020408
		09 리튬공기전지	T020409
		10 비리튬계 금속이온 전지	T020410
	05 청정연료	01 석탄가스화	T020501
		02 석탄가스 정제	T020502
		03 석탄가스 액화	T020503
		04 천연가스 리포밍	T020504
		05 천연가스 유래 FT(Fisher-Tropsch)합성	T020505
		06 육상용 GTL(Gas to Liquid) 통합공정	T020506
		07 해상 GTL-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통합공정	T020507
		08 GTL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핵심기자재	T020508
		09 SNG(Synthetic Natural Gas) 합성	T020509
		10 천연가스 유래 메탄올 합성	T020510
		11 천연가스 유래 DME(Dimethyl Ether) 합성	T020511
		12 Upgrading 공정	T02051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6 히트펌프	01 전기구동 히트펌프(EHP, ElectricHeatPump)	T020601
		02 열원구동 히트펌프(Adsorption Heat Pump, AHP)	T020602
		03 가스구동 히트 펌프(Gas-engine Driven Heat Pump, GHP)	T020603
	07 신광원 고효율 조명	01 풀칼라 LED 감성 조명기기	T020701
		02 무전극 램프	T020702
		03 고효율HID램프	T020703
		04 OLED 조명	T020704
		05 특수용 조명기기 및 부품	T020705
	08 소형열병합 기술	01 스털링엔진 열병합발전 기술	T020801
		02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T020802
		03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T020803
	09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산업공정 고효율화	01 시멘트 제조공정	T020901
		02 제철 제조공정	T020902
		03 제지 제조공정	T020903
		04 공업로	T020904
		05 건조기	T020905
		06 보일러・연소기기	T020906
		07 전동기·사출성형기	T020907
		08 조명기기	T020908
		09 냉난방기기	T020909
		10 가전기기	T020910
		11 LNG 수송 기술	T020911
		12 절삭가공기계	T020912
	10 핵융합	01 핵융합 실증플랜트 통합 설계 기술	T021001
		02 핵융합 장치기술	T021002
		03 핵융합 에너지변환 및 수송계통	T021003
		04 핵융합 플라즈마가열 및 진단 계통	T021004
		05 핵융합 플라즈마 수소 연료 주기 계통	T021005
		06 핵융합 실증플랜트 운전 보수유지	T021006
03 첨단수자원	01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01 하천환경 조사/평가	T030101
		02 홍수터 적응관리 및 수역 확장 기술	T030102
		03 치수·환경 융합형 하도설계 기술	T030103
		04 생물서식처 기반 환경 조성 기술	T030104
	02 담수 플랜트	01 차세대 해수담수화 플랜트	T030201
		02 신재생 담수플랜트	T030202
	03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01 홍수방어 시설	T030301
		02 홍수 대응·관리 시스템	T030302
		03 물 부족 대응 시스템	T030303
		04 기후변화 평가·예측·적응	T030304
		05 자연재해 피해예측 및 저감	T030305
	04 통합수자원관리	01 IT/GIS 기반 수자원 정보시스템	T030401
		02 유역 물 해석	T030402
		03 수자원 평가 및 관리	T03040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4 Smart Water Grid	T030404
	05 수계 수질 평가/관리	01 수질모니터링을 위한 원격탐사기술	T030501
		02 지상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2
		03 상 · 하수 관망 유량/오염도 모니터링 시스템	T030503
		04 오염 하천 정화	T030504
		05 유해물질 위해성 센싱 시스템	T030505
	06 해양수자원	01 심층수	T030601
	07 고효율 농어촌 용수 자원	01 농어촌 용수고도이용(농업용수관리시스템)	T030701
		02 농어촌 수리시설개선	T030702
		03 농어촌 용수관리 시스템	T030703
		04 청정 농어촌 용수공급 및 관리	T030704
		05 농업가뭄예측 및 피해저감 기술	T030705
		06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향상 기술	T030706
	08 고도 수처리	01 하·폐수 처리 기술	T030801
		02 물 재이용 기술	T030802
		03 이산화탄소 저 발생 수처리 기술	T030803
		04 빗물 관리 및 이용 기술	T030804
		05 비점오염 관리기술	T030805
		06 분리막 및 장착 시스템	T030806
		07 정수기술	T030807
	09 누수방지 및 절수	01 상하수도관망 누수방지 기술	T030901
		02 물 수요관리 및 절수기술	T030902
04 그린IT	01 LED	01 LED 칩	T040101
		02 마이크로 LED 칩	T040102
		03 LED 패키지	T040103
		04 LED 제조장비	T040104
		05 수송용 LED 광원 모듈	T040105
		06 의료/바이오/환경 LED 광원모듈	T040106
		07 디스플레이 LED 광원모듈	T040107
		08 스마트 조명 시스템	T040108
	02 시스템 반도체	01 컴퓨터 반도체	T040201
		02 통신 반도체	T040202
		03 가전 반도체	T040203
		04 자동차 반도체	T040204
		05 전력반도체	T040205
		06 바이오 반도체	T040206
	03 메모리 반도체	01 DRAM/SRAM	T040301
		02 Flash/NVM	T040302
		03 New Memory	T040303
	04 차세대 디스플레이	01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T040401
		02 OLED 조명	T040402
		03 친환경 초절전 LCD	T040403
		04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전자종이 등)	T040404
		05 무안경 3D 기술	T040405
		06 신기능융복합 디스플레이	T040406
		07 AR/VR	T040407
	05	01 IT기기 에너지 절감 솔루션	T04050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그린 SW & 솔루션	02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및 최적화기술	T040502
		03 전동기제어솔루션	T040503
		04 전자문서관리	T040504
	06 그린 컴퓨팅	01 그린 컴퓨팅 하드웨어 기술	T040601
		02 그린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	T040602
		03 그린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T040603
		04 그린 컴퓨팅 인프라기술	T040604
		05 지능형(AI) 컴퓨팅 기술	T040605
		06 빅데이터 컴퓨팅 기술	T040606
	07 그린 임베디드 SW	01 그린 임베디드 OS	T040701
		02 그린 임베디드 미들웨어	T040702
		03 초소형 운영체제 플랫폼	T040703
		04 임베디드 SW 개발도구	T040704
		05 CPS(Cyber Physical System) 컴퓨팅 플랫폼	T040705
		06 임베디드 인공지능	T040706
	08 사물인터넷(IoT)	01 개별물품 인식 RFID 및 IoT 센서	T040801
		02 IoT 센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용	T040802
		03 지능형 RFID/USN 및 IoT 미들웨어	T040803
		04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T040804
		05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IoT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T040805
	09 스마트그리드	01 스마트변전 시스템	T040901
		02 스마트송전 시스템	T040902
		03 AMI 시스템	T040903
		04 스마트배전 시스템	T040904
		05 DC/FACTS(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T040905
		06 ESS (에너지저장시스템)	T040906
		07 전기차 충전시스템	T040907
		08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T040908
	10 3D 프린팅	01 장비	T041001
		02 소재	T041002
		03 소프트웨어	T041003
	11 웨어러블	01 액세서리형	T041101
		02 직물/의류 일체형	T041102
		03 신체부착형	T041103
		04 생체이식형	T041104
	12 지능형로봇	01 로봇시스템 설계기술	T041201
		02 로봇 부품 기술	T041202
		03 로봇 지능 기술	T041203
		04 로봇 인지기능 HRI (Human-Robot Interaction) 기술	T041204
	13 이차전지	01 초소형 박막 이차전지	T041301
		02 플렉서블 이차전지	T041302
		03 고체 전해질 전지	T041303
	14 디지털방송	01 방송 송출 기술	T041401
		02 방송 수신 기술	T041402
		03 방송 측정 기술	T041403
		04 방송 제작 기술	T041404
		05 방송 응용서비스 기술	T04140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6 스마트 방송	T041406
	15 무선통신	01 이동통신	T041501
		02 TRS 통신	T041502
		03 LBS	T041503
		04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T041504
		05 해상/항공/위성 무선통신	T041505
	16 방송통신 네트워크	01 초고속 전송 네트워크	T041601
		02 초고속 교환 네트워크	T041602
		03 초고속 가입자 네트워크	T041603
		04 홈 네트워크	T041604
		05 지능형 사물통신 네트워크	T041605
		06 인터넷데이터 센터(IDC)	T041606
		07 양자 네트워크	T041607
	17 전자파	01 전파응용	T041701
		02 전파자원 활용 기술	T041702
		03 전파기반	T041703
		04 전자파장해 보호	T041704
	18 콘텐츠 제작기술	01 영상·뉴미디어	T041801
		02 가상현실/증강현실	T041802
		03 공연·전시	T041803
	19 저장장치	01 HDD	T041901
		02 SSD	T041902
		03 Tape Drive	T041903
05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01 친환경 자동차	01 하이브리드 자동차(플러그인 포함)	T050101
		02 전기자동차	T050102
		03 연료전지 자동차	T050103
	02 저공해 고효율 차량	01 온실가스/배출가스 저감형 자동차	T050201
		02 신재생/저탄소 연료/대체 연료 자동차	T050202
		03 디젤 자동차	T050203
	03 친환경 농기계	01 농용 작업기계	T050301
		02 농용 차량 및 트랙터	T050302
		03 축산기계	T050303
	04 친환경 선박	01 친환경 고효율 선박 및 기자재	T050401
		02 해양플랜트	T050402
		03 친환경 레저 보트	T050403
	05 스마트 선박	01 정보인프라 시스템	T050501
		02 이동/위성통신시스템	T050502
		03 e-Navigation 기반 운항정보 시스템	T050503
		04 무인·자율운항 통합관리시스템	T050504
	06 첨단 철도	01 차체/대차 시스템 기술	T050601
		02 추진 및 열차제어 기술	T050602
		03 궤도/노반 기술	T050603
		04 철도 교량/터널 기술	T050604
		05 급전/집전 기술	T050605
		06 철도 환경 기술	T050606
	07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01 경량 자전거	T050701
		02 전기 자전거	T050702
		03 전기 이륜차	T05070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4 기타 개인 이동수단	T050704
	08 고효율 해상물류	01 물류시스템 계획 및 설계	T050801
		02 물류시설 및 장비	T050802
		03 물류운영 및 관리	T050803
	09 해사 안전	01 해상교통안전	T050901
		02 해양인적안전	T050902
		03 해양안전관리	T050903
		04 해상보안관리	T050904
	10 드론	01 해상드론 관련 기술	T051001
		02 수륙양육드론 관련 기술	T051002
06 **첨단그린** **주택・도시**	01 스마트-City	01 스마트-City 통합운영센터	T060101
		02 스마트-City 운영관리	T060102
		03 스마트-City 스마트그리드	T060103
		04 스마트-Eco 주거공간구축	T060104
		05 그린라이프스타일구축기술	T060105
		06 스마트-Eco 생산공간 구축기술	T060106
		07 스마트-Eco 공공 및 지원 공간	T060107
	02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01 지능형 교통 서비스 기반	T060201
		02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T060202
		03 Smart Highway	T060203
		04 교통정보 취득・가공・표출 기술	T060204
	03 GIS(공간정보)	01 공간정보관리	T060301
		02 도시시설물 관리	T060302
		03 위치기반 정보서비스	T060303
	04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01 고효율 외피시스템	T060401
		02 저탄소 친환경 건축자재	T060402
		03 고효율 설비시스템	T060403
		04 농촌환경 농가주택	T060404
		05 기능성 건축자재	T060405
07 **신소재**	01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01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T070101
		02 고기능 마그네슘 주조재	T070102
		03 고성형 마그네슘 판재	T070103
		04 고강도 마그네슘 형재	T070104
		05 고효율 마그네슘 융합소재	T070105
	02 Ionic Liquid 소재	01 전해질 소재	T070201
		02 분리정제 소재	T070202
		03 그린촉매공정 소재	T070203
		04 마찰저감 소재	T070204
	03 나노탄소융합소재	01 탄소나노튜브(CNT)	T070301
		02 흑연 나노섬유(GNF)/탄소 나노섬유(CNF)	T070302
		03 탄소섬유	T070303
		04 그래핀/그래핀 옥사이드	T070304
		05 융복합소재	T070305
	04 기능성 나노필름	01 광학용 나노필름	T070401
		02 열응용 나노필름 및 소재	T070402
		03 에너지변환 나노필름(농업용필름 포함)	T070403
	05 농림수산자원 유래 천연소재	01 천연물 소재	T070501
		02 기능식품 소재	T0705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3 기능성 화장품 소재	T070503
		04 기능성 바이오 소재	T070504
		05 천연물 유래 식품첨가제	T070505
		06 천연 사료첨가제	T070506
		07 비료/농약 첨가물	T070507
	06 희토류자성소재	01 Nd계 희토류 소결자석소재	T070601
		02 Nd계 희토류 본드자석소재	T070602
	07 고특성 알루미늄 소재	01 친환경 알루미늄 원소재	T070701
		02 고기능 알루미늄 주조재	T070702
		03 고성형 알루미늄 판재	T070703
		04 고강도 알루미늄 형재	T070704
		05 고품위 알루미늄 재생 소재	T070705
	08 그린섬유 소재	01 자원 순환 녹색섬유 소재	T070801
		02 에너지 저감형 녹색섬유 소재	T070802
		03 친환경 녹색섬유 소재	T070803
	09 광소자용 단결정 소재	01 대구경 사파이어 단결정	T070901
		02 질화갈륨 단결정	T070902
	10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01 압전하베스팅 소재	T071001
		02 기타 에너지하베스팅 소재	T071002
	11 그린 고분자 소재	01 폴리케톤 원소재	T071101
		02 폴리케톤 컴파운드 소재	T071102
		03 산업용 폴리케톤 부품	T071103
		04 폴리케톤 원사	T071104
		05 폴리케톤 섬유제품	T071105
	12 해양생명공학 소재	01 해양생물소재	T071201
	13 의약소재	01 단백질 의약품	T071301
		02 치료용 항체	T071302
		03 백신	T071303
		04 유전자 의약품	T071304
		05 재생 의약품	T071305
		06 천연물 의약품	T071306
		07 저분자 의약품	T071307
		08 개량 의약품	T071308
		09 나노의학소재	T071309
		10 미생물 제제	T071310
08 **청정생산**	01 국제환경규제대응	01 유해물질 저감 및 대체	T080101
	02 무오염생산	01 유니(Uni) 소재	T080201
		02 그린프린팅 제품	T080202
		03 그린 프로세스(E2) 제품 E2 : Ecological and Economical	T080203
		04 무 배출 그린생산	T080204
		05 청정융합	T080205
	03 자원순환	01 자원순환(Hm³, Hidden Materials Mining)	T080301
		02 재제조(Remanufacturing)	T080302
		03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생태산업단지)	T08030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4 해양광물자원	01 바다모래 채취기술	T080401
		02 해양 용존 금속 회수기술	T080402
09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01 생태환경변화대응	01 식량자원 LCI(Life Cycle Inventory) 구축	T090101
		02 농업환경	T090102
		03 어업환경	T090103
		04 산림환경	T090104
		05 재해·질병 방제	T090105
	02 생물자원	01 유전자원	T090201
		02 신품종	T090202
		03 종자	T090203
	03 저투입 생산	01 대체에너지 이용	T090301
		02 LED 이용	T090302
		03 친환경 생산	T090303
	04 첨단자동화 시스템 및 기자재	01 작업용 로봇	T090401
		02 식물공장시스템	T090402
		03 축산시설 자동화시스템	T090403
		04 어업(양식)자동화	T090404
	05 식품생산	01 유기식품	T090501
		02 저에너지/저탄소 식품 살균기술	T090502
		03 에너지절약형 가공기술	T090503
	06 안전유통	01 검역관리시스템	T090601
		02 품질관리시스템	T090602
		03 냉각시스템	T090603
		04 저장·포장재 및 시스템	T090604
		05 에코 주방 시스템	T090605
	07 친환경 농자재	01 작물 생육, 재배, 관리 자재	T090701
		02 토지개량 및 보호 자재	T090702
10 환경보호 및 보전	01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01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T100101
		02 기후변화 관측/감시	T100102
	0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01 기후변화영향	T100201
		02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T100202
		03 기후변화 적응	T100203
		04 온실가스 관리	T100204
		05 탄소수지 정량화	T100205
	03 폐기물 및 폐자원	01 폐기물/자원 회수/처리	T100301
		02 폐기물/자원 재활용	T100302
		03 폐기물 저감	T100303
	04 유기성 부산물	01 목질계 부산물	T100401
		02 하수슬러지/음식물류 폐기물	T100402
		03 가축분뇨	T100403
		04 농수산 부산물	T100404
	05 친환경제품	01 친환경 원부자재	T100501
		02 친환경 공정	T100502
		03 친환경제품 설계 및 생산/처리 기술	T100503
	06 생태계 보전 및 복원	01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T100601
		02 인간 활동에 따른 생태영향 평가	T100602
		03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관리	T100603
		04 토양/지하수/지표수의 오염 정화/복원	T10060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07 유해성 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 정화	01 실내 공기질 분석/진단/개선	T100701
		02 에코 실내 환기설비	T100702
		03 건물 공조용 공기정화설비	T100703
		04 유해성물질 측정 센서	T100704
		05 유해성물질 측정기	T100705
		06 악취/휘발성 유기화합물 처리설비	T100706
		07 유해 대기오염물질 제어/관리 기술	T100707
		08 미세/초미세먼지 제어 관리 기술	T100708
	08 기상·지진·화산	01 고층관측	T100801
		02 지상관측	T100802
		03 해양관측	T100803
		04 지진·화산 탐지	T100804
		05 원격탐사	T100805
		06 기상예보 시스템	T100806